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8일, 박성훈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상정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3.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교육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 의원)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
상자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 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별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지원 대상 아동이 “법 제5조에 따라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조손가족”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동일한 지원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이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재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항목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중위소득 80%~10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중위소득 63% 또는 72% 이하)보다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고,

교육 정보화 지원의 경우 모든 시·도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족구성 형태(부자, 모자, 조손 등)와 관계없이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실상 현재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김용태 의원, 박성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